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7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정청래·김현정·장경태

최민희 · 장종태 · 임오경

허종식 • 진선미 • 박지원

민병덕 · 모경종 · 김승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 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12. 3.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 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 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「형법」상 내란 죄에 동조한 바 있음.

이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(안 제 144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·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4조제2항 중 "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"를 "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둔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경찰공무원은"을 "국회경찰은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회경찰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다.
- ⑤ 국회경찰의 신규채용, 시험의 실시, 승진, 근무성적평정, 보수 및 교육훈련, 조직, 업무 지역 및 직무 범위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(생	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	②		
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	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		
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	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		
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	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		
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	국회경찰을 둔다.		
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	③		
받아 수행하되, 경위는 회의장			
건물 안에서, <u>경찰공무원은</u> 회	<u>국회경찰은</u>		
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.			
<u><신 설></u>	④ 국회경찰은 그 업무 수행		
	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		
	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		
	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		
	<u>직무를 수행한다.</u>		
	⑤ 국회경찰의 신규채용, 시험		
	의 실시, 승진, 근무성적평정,		
	보수 및 교육훈련, 조직, 업무		
	지역 및 직무 범위는 국회규칙		
	으로 정한다.		